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27
------	------

2013. 7. 4.  
재정경제위원회

##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3년 4월 30일

나. 제안자 : 김춘수 의원(찬성자 9명)

다. 회부일자 : 2013년 5월 02일

라.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4차 재정  
경제위원회(2013년 7월 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  
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 II . 제안설명 요지

- 서울특별시가 일반시민들에게 현행 자치법규를 알리기 위해 운영 중인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 오류가 있을 경우 법규적용에 혼란은 물론 나아가 개인의 각종 권리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게재절차 상

공문서의 작성에 준하는 결재를 거치도록 하고 동시에 해당 사이트를 임의로 교란한 사람은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아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에게 제공되는 자치법규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Ⅲ . 주 요 내 용

-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의 기능과 주요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의 법적 지위를 규정함(안 제4조).
-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오류를 신고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사람에게는 포상을 하도록 함.(안 제6조)
-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하여 실무부서가 예산을 확보하는 등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함.(부칙)

## IV.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 남 중)

### 가. 제정안의 개요

- 동 제정안은 인터넷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인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 오류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각종 권리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 법적지위를 부여하여 운영상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치법규의 오류를 신고하거나 개선 방안을 제안한 사람에게는 포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시민에게 제공되는 자치법규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 나. 분야별 세부검토

#### 1) 조례 목적과 제명의 적정성(안 제1조)

- 제정안은 서울시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시민에게 제공되는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 규정을 두고 있음.
- 조례의 제명과 관련하여 현재 자치법규 정보 제공을 위해 운영

하는 시스템 명칭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이고, 동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정확성 및 안정적 유지관리에 있으므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명칭의 정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됨.

## 2)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제정안은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라는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 자치법규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현재 인터넷 상 운영중인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법무행정 관련정보는 ‘자치법규’, ‘규제개혁’, ‘무료 법률상담’, ‘행정심판’ 자료와 서울시 및 자치구 소속 직원들의 ‘소청심사 절차’, 그리고 시민들의 소송 진행 상황을 비롯하여, 법제처 소속 ‘법제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현행법령’이 링크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서울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규정은 이를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용어를 정의하는데 있어 보다 세분화하여 시민들이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용이하고, 그 뜻과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나타내기 위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 “자치법규”, “규제”, “행정심판”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3) 법무행정온라인 서비스의 기능(안 제3조)

#### <법무행정 온라인 서비스의 기능>

제3조(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의 기능 등) ①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예규)
  2. 규제개혁
  3. 무료법률상담
  4. 행정심판
  5. 법률행정정보
  6. 고시·공고
  7. 현행법령(링크)
  8. 그 밖에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②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는 다양한 검색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로 제공되는 자치법규는 1개 이상의 외국어로도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외국어로만 제공될 경우에는 영어로 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 포함될 항목과 다양한 검색기능 및 외국어 제공기능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항목 중 “고시·공고” 항목은 법무담당관에서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고시하거나 공고를 낼 때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 포함시킬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발생하여 담당부서에서는 이 항목을 제외 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또한, 제정안은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가 “1개 이상의 외국어도 제공”하도록 규정을 강제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례를 제·개정하는 빈도가 잦아 매번 영어로 번역하여 게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동 사항도 임의규정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이 요구됨.

#### 4) 법무행정온라인 서비스의 지위(안 제4조)

- 제정안은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로 제공되는 자치법규는 서울 시보와 같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는 “공문서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음.
- 이 중 ‘법규문서’는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에 관한 문서'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같은 '자치법규'가 법규 문서에 포함되는지는 법적 해석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어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움.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 다만,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법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고,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를 기본으로 하며, 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되는 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를 기본으로 하며, 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를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

- 또한,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 규정도 관련 법률과 같이 부차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국가법령정보를 관리하는 법제처에서는 “각종 법령정보시스템은 법적인 효력 없이 참고사항으로 제공할 뿐 법령의 법적인 효력은 관보에 있다”는 의견도 있음.

## 5) 시장의 책무(안 제5조)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현행 자치법규를 고시 후 10일 이내에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입력시스템 개선 등 입력요류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는 1일 24시간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의 웹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를 안내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의 게재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그 변경 이력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⑦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현행 자치법규를 고시 후 10일 이내에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 게재”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자치법규가 제·개정될 경우 「자치법규집 편찬 및 관리규칙」(제4조제2항)에 따르면, 전자법규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자치법규서비스로 전자법규집은 공포 또는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제정안에서 “고시 후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공포·발령 후 7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관리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집”이란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훈령 및 예규 등을 수록한 법규집을 말하며, 종이법규집과 전자법규집으로 구분한다.
3. “전자법규집”이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자치법규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수록할 사항 등)

- ② 종이법규집은 년 4회 이상 추록하며, 전자법규집은 공포 또는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한다.

## 6) 포상규정(안 제6조)

- 제정안은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오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하여야 한다.”로 강제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는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자치법규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Ⅴ.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조례 명칭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수정하고,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 대해 공문서의 효력을 부여한 사항은 동 시스템이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동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오류를 신고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사람에게 포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조례의 제명 중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를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수정함.
-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로 제공되는 자치법규는 서울시보와 같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
-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오류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도록 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함(안 제6조).

Ⅵ.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27
----------	---------

제안년월일 : 2013년 7월 4일  
제안자 : 재정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가. 조례 명칭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수정하고,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 대해 공문서의 효력을 부여한 사항은 동 시스템이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동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오류를 신고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사람에게 포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수정의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중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를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수정함.

나.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로 제공되는 자치법규는 서울시보와 같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

다.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오류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도록 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함(안 제 6조).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제공되는 법무행정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치법규, 규제개혁, 무료법률상담, 행정심판 등 법무행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시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말한다.
3. “규제”란 시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례·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시 산하기관 또는 자치구에서 행하는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에 관한 청구 사건을 말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기능) ①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현행 자치법규 및 연혁
  2. 규제개혁
  3. 무료법률상담
  4. 행정심판
  5. 법률행정정보
  6. 입법예고
  7. 현행법령
  8.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②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는 자치법규, 법령 등과 관련한 검색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는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1개의 외국어로만 제공될 경우에는 영어로 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지위) 자치법규는 서울시보의 발행으로 공포·발령되는 자치법규를 기본으로 하며, 이미 공포·발령된 자치법규의 내용과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

의 내용이 다를 경우 공포·발령된 자치법규의 내용이 우선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자치법규를 공포하거나 발령한 경우 공포하거나 발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정확한 법무행정정보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은 1일 24시간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웹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을 안내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의 게재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그 변경 이력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6조 중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로”를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로 하며, “포상하여야 한다.”를 “포상할 수 있다.”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u>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u> 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u>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u> 에 관한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시민에게 제공되는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제공되는 법무행정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라 함은 온라인으로 현행 서울특별시의 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u>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u>이란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치법규, 규제개혁, 무료법률상담, 행정심판 등 법무행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시스템</u>을 말한다.</p> <p>2. “<u>자치법규</u>”란 <u>시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u>를 말한다.</p> <p>3. “<u>규제</u>”란 <u>시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례·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u>을 말한다.</p> <p>4. “<u>행정심판</u>”이란 <u>시 산하기관 또는 자치구에서 행하는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에 관한 청구 사건</u>을 말한다.</p>

원 안	수 정 안
<p><b>제3조(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의 기능 등)</b></p> <p>① <u>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예규)</u></li> <li>2. <u>규제개혁</u></li> <li>3. <u>무료법률상담</u></li> <li>4. <u>행정심판</u></li> <li>5. <u>법률행정정보</u></li> <li>6. <u>고시·공고</u></li> <li>7. <u>현행법령(링크)</u></li> <li>8. <u>그 밖에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u></li> </ol> <p>② <u>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는 다양한 검색기능을 갖추어야 한다.</u></p> <p>③ <u>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로 제공되는 자치법규는 1개 이상의 외국어로도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외국어로만 제공될 경우에는 영어로 하여야 한다.</u></p>	<p><b>제3조(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기능) ①</b> <u>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현행 자치법규 및 연혁</u></li> <li>2. <u>규제개혁</u></li> <li>3. <u>무료법률상담</u></li> <li>4. <u>행정심판</u></li> <li>5. <u>법률행정정보</u></li> <li>6. <u>입법예고</u></li> <li>7. <u>현행법령</u></li> <li>8. <u>그 밖에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u></li> </ol> <p>② <u>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는 자치법규, 법령 등과 관련한 검색기능을 갖추어야 한다.</u></p> <p>③ <u>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는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1개의 외국어로만 제공될 경우에는 영어로 한다.</u></p>
<p><b>제4조(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의 지위) ①</b> <u>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로 제공되는 자치법규는 서울시보와 같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u></p> <p>② <u>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와 고시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고시내용이 우선한다.</u></p>	<p><b>제4조(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지위) ①</b> <u>&lt;삭제&gt;</u></p> <p><u>자치법규는 서울시보의 발행으로 공포·발령되는 자치법규를 기본으로 하며, 이미 공포·발령된 자치법규의 내용과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의 내용이 다를 경우 공포·발령된 자치법규의 내용이 우선한다.</u></p>

원 안	수 정 안
<p><b>제5조(시장의 책무)</b> ① 시장은 현행 자치법규를 고시 후 10일 이내에 <u>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u>에 게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u>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u>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u>입력시스템 개선 등 입력오류 예방</u>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u>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u>는 1일 24시간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④ 시장은 <u>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u>의 웹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u>서울특별시 홈페이지</u>를 통해 <u>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u>를 안내하여야 한다.</p> <p>⑥ 시장은 <u>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u>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의 게재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그 변경 이력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p> <p>⑦ 시장은 <u>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u>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5조(시장의 책무)</b> ① 시장은 자치법규를 공포하거나 발령한 경우 공포하거나 발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u>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u>에 게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u>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u>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u>정확한 법무행정정보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u>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u>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u>은 1일 24시간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④ 시장은 <u>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u>의 웹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u>시 홈페이지</u>를 통해 <u>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u>을 안내하여야 한다.</p> <p>⑥ 시장은 <u>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u>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의 게재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그 변경 이력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p> <p>⑦ 시장은 <u>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u>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6조(포상)</b> 시장은 <u>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u>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오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u>포상</u>하여야 한다.</p>	<p><b>제6조(포상)</b> 시장은 <u>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u>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오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u>포상</u>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p> <p>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p> <p>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제공되는 법무행정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치법규, 규제개혁, 무료법률상담, 행정심판 등 법무행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시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말한다.
3. “규제”란 시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례·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시 산하기관 또는 자치구에서 행하는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에 관한 청구 사건을 말한다.

제3조(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기능) ①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현행 자치법규 및 연혁
  2. 규제개혁
  3. 무료법률상담
  4. 행정심판
  5. 법률행정정보
  6. 입법예고
  7. 현행법령
  8.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②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는 자치법규, 법령 등과 관련한 검색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는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1개의 외국어로만 제공될 경우에는 영어로 한다.

**제4조(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지위)** 자치법규는 서울시보의 발행으로 공포·발령되는 자치법규를 기본으로 하며, 이미 공포·발령된 자치법규의 내용과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의 내용이 다를 경우 공포·발령된 자치법규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자치법규를 공포하거나 발령한 경우 공포하거나 발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정확한 법무행정정보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은 1일 24시간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웹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의 게재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그 변경 이력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⑦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오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